

---

# 2010년도 시청자 권익 지원사업 설명회 자료집

---

2010. 2.

## 목 차

I. 지원사업 안내문 .....	1
II. 2010년도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	4
III. 2010년도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 .....	23
IV.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	35
V. Q & A .....	48

---

# I . 지원사업 안내문

---

# 2010년도 시청자 권익 지원사업 안내

방송법 제38조에 의하여 「2010년도 시청자 권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0. 2. 8.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전파진흥원

## 1. 사업 목적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및 방송수신기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방송 접근성 강화 및 건전한 방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2. 지원 대상 및 지원 분야

### 가.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 지원 분야 및 사업 유형

지원 분야	사업유형
방송수신기 보급사업	- 시각청각 장애인 및 난청노인용 방송수신기 보급
장애인 기획사업 지원	- 장애인 방송접근권 향상이 가능한 창의적 기획사업 (장애인 관련 정책제안, 세미나 및 교육 등)

- 지원자격

- 시청자 지원사업을 수행할 역량이 있는 기관으로, 시·도지사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는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기획재정부,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나.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지역 지상파방송사(KBS 제외) 및 종합유선방송사(SO)
- 지원분야 및 지급기준

지원분야	지급기준
- 지역 지상파방송사 (KBS제외)	- 주 1회 이상 정규편성 프로그램 - 분당 3~6만원 지급(등급별 차등)
- 종합유선방송사(SO)	- 연간 지급한도 : 600만원 이내/개인 또는 단체

※ 정부 타 지원사업으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으로 지원 불가

## 3. 사업 추진기간

- 가.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 2010년 3월 ~ 2010년 9월 30일
- 나.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지원사업 : 2010년 3월 ~ 2010년 11월 30일

## 4. 신청기간 및 접수처

- 가. 신청기간 : 2010. 2. 8.(월) 09:00 ~ 2010. 2. 19.(금) 18:00
- 나.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택배 또는 퀵서비스로는 제출 불가,  
2월 19일 오후 6시까지 접수처 도착분 유효)
- 다. 접 수 처 : ☎ 138-950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78 IT 벤처타워 서관 14층  
한국전파진흥원 시청자권익증진부 (☎ 02-2142-4444~6)
- 라. 유의사항 : 접수기한을 넘긴 경우와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는 접수하지  
아니함

## 5. 사업설명회

- 가. 일시 및 장소 : 2010. 2. 10(수) 15:00, 목동 방송회관 3층 회의실
- 나. 신청서류 작성요령, 심사기준, 회계기준 등 사업신청에 필요한 사항 안내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http://www.kcc.go.kr)) 및 한국전파진흥원  
홈페이지([www.korpa.or.kr](http://www.korpa.or.kr))를 참조

---

## Ⅱ. 2010년도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

# 2010년도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 1 사업 세부내용

### □ 사업개요

- 장애인·난청노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방송 수신기 보급 및 장애인을 위한 창의적 기획사업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 배정액	주요내용
○ 자막방송 수신기 보급	1,303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이 가능한 기기 보급 사업 ※ 디지털TV 일체형으로 5,000대 보급 ※ 디지털방송 컨버터(자막기능) 3,000대 보급
○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보급	660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보급사업 ※ 디지털방송 수신기 가능한 기종으로 4,000대 보급
○ 난청노인용 수신기 보급	261	·난청노인을 돕기 위한 방송수신기 보급 사업 ※ 이어폰형 기종으로 5,600대 보급
○ 장애인 기획사업 지원	70	·장애인 방송접근권 향상이 가능한 창의적 기획사업 (장애인 관련 정책제안, 세미나, 교육 등)
<b>합 계</b>	<b>2,294</b>	

### □ 지원자격

- 시·도지사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민간 단체·비영리법인으로서 시청자 지원사업을 수행할 역량이 있는 기관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 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는 지원금의 지원을 제한(기획재정부,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 사업기간

- 2010년 3월 ~ 2010년 9월 30일 이전

## □ 지원금 교부

○ 1차에 70%, 중간점검 후 2차에 30% 지급

※ 사업내용상 1차 전액지원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1차에 100% 지급 가능

## □ 지원조건

○ (수혜대상)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 및 난청노인

- 자막·화면해설 방송수신기는 시각·청각 장애인 1급~6급을 대상으로 하되,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보급할 것

- 난청노인용 수신기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상 청각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청력손실이 41~59dB 정도에 해당하는 자에 보급할 것

※ 객관적인 난청상태의 확인을 위해 '오디오미터 측정 청력검사 결과 진단서' 첨부 (이비인후과 전문의 또는 보건소 공중보건과)나 의사소견서 제출 필요

### ※ 저소득층의 범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활보장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② 차상위계층에 속한자(복지전화감면대상자증명서 및 기타 차상위급여대상임을 증명 가능한 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④ 기타 가구당 최저생계비 180% 미만인 자

※ 저소득층을 우선 보급대상으로 하되,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시청각 장애인은 중증(1~3급)장애인, 난청노인용 수신기의 경우 독거노인도 수혜 대상으로 고려가능

○ (사업주체 이행조건) 회계검사·중간평가·최종평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사업계획과 예산 변경 시 승인(신고) 절차를 준수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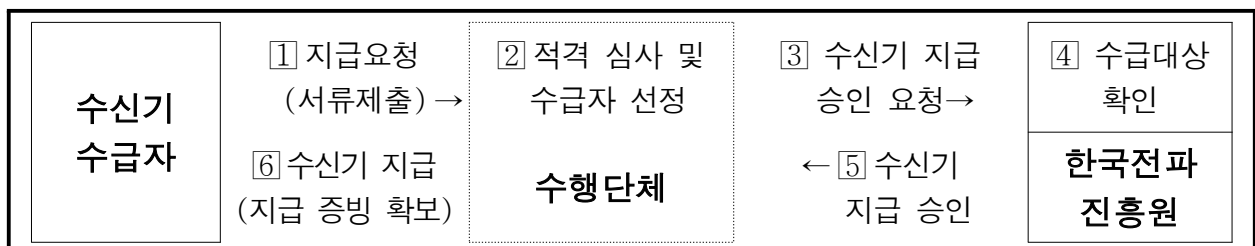
- 보급대상자 선정경로를 지방자치단체·자선단체 등으로 확대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수신기보급 계획에 회원단체 이외 지방자치단체·자선단체 등으로부터의 수요 및 요청사항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

- 전국적으로 A/S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할 것



- (수신기 등 조건) 2009년 「방송소외계층 방송수신기 활용실태조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최대한 사용자의 건의내용을 반영할 것
  - 수신기 보급 시 사용자 대상으로 사용방법에 관해 충분한 교육과 사용 설명서를 배포할 것
  - 수신기에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보급하였음」 문구를 표시할 것
  - 수신기 성능은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전파진흥원과 협의하여 공인된 인증기관으로부터 기술 검증을 받아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전파진흥원은 지원금 교부 후 수신기 성능 충족조건 등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
  - 자막방송수신기는 디지털방송 수신이 가능한 TV 일체형과 자막방송수신이 가능한 D to A 컨버터, 화면해설방송수신기는 디지털방송 수신이 가능한 기종, 난청노인용 수신기는 이어폰형 기종으로 보급
  - 신규 보급을 원칙으로 하되, 기 보급된 수신기의 교체·지역별 균형배분 등 세부내용은 사업자 선정 후 한국전파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수신기 보급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매월 또는 분기별로 한국전파진흥원에 수신기 지급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승인요청시 수급자의 적격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및 수혜 당사자 또는 보호자(대리인)의 연락처 제출
    - ※ 증빙자료를 토대로 방송수신기 활용 실태조사 실시 예정
  - 자막방송수신기의 경우 2010년 DTV 전환시범사업지역인 경북 울진, 전남 강진, 충북 단양 지역은 보급 제외
- (보급절차) 수행단체는 수신기 수급(대상)자의 지급요청에 의해 수급자 적격 심사 및 수급자를 선정한 후, 한국전파진흥원으로부터 수신기 지급 승인을 받고 수급자에게 수신기 지급(확인서 등 지급 증빙자료 확보)



## 2 지원 사업심사

### □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 원칙

-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업운영을 위해 관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객관적 심사기준에 의해 사업수행단체 선정

### □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접 관련되는 인사는 배제하고, **사회복지·미디어·법률·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2인을 포함하여 **총 10인** 이내로 구성

### □ 심사방법

- 심사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배점하여 평가
  - 평가지표 및 세부평가항목별 배점 : 심사표 참조
  - 예산범위 안에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 대상 사업자 선정
  - 평가점수 60점 미만 지원사업자는 순위와 관계없이 탈락
- (심사기준) 5개 평가지표를 설정, 9개 세부평가항목별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

구분	평가지표	심사기준	배점	비고
사업계획 (50점)	사업목표(20점)	① 사업목표의 명확성, 목표의 이해도	10	비계량
		② 시청자권익 실현 가능성	10	
	사업내용(30점)	③ 사업목표와의 부합성	10	
		④ 실현가능성	10	
		⑤ 내용의 충실성 및 구체성	10	
신청단체 (10점)	단체역량(10점)	⑥ 상근인력의 존재여부 및 유사 사업 수행경험	10	
예산편성 (30점)	예산편성(30점)	⑦ 예산편성의 적정성	20	계량
		⑧ 자부담비율(15%이상, 15%미만, 10%미만)	10	
평가결과 (10점)	평가결과(10점)	⑨ 전년도 지원사업 평가결과(평가점수X10%) ※ 신규신청단체는 전년도 평가결과 평균점수	10	
<b>총 점</b>			<b>100</b>	

### ③ 지원사업 평가 및 관리

#### □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보고서 주요내용 : 사업추진 실적, 자체평가 내용, 사업비 지출 회계 보고, 수신기 수급자 명단 및 증빙자료, 사업관련 영수증 사본, 물품계약서 등
- 제출일자 : 2010년 6월 첫째주(중간 보고), 2010년 10월 첫째주(종합 보고)

※ 각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 □ 중간평가

- 평가내용 : 사업추진 실적 및 회계처리기준 준수 여부 등
- 평가방법 : 사업보고서에 의한 서면평가, 필요 시 현지실사
- 평가결과 : 관련 법규에 의거 자부담 조치 등

#### □ 종합평가(최종 사업수행 결과 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 여부, 사업성과, 회계처리기준 준수 여부 등
- 평가방법 : 사업보고서에 의한 서면평가, 필요 시 현지실사
- 평가결과 : 관련 법규에 의거 지원금 환수 등 적의 조치 및 '10년도 사업선정 시 반영

#### □ 회계교육 및 회계검사 : 전문 회계법인에 위탁

- 회계 교육
  - 교육 시기 : 지원금 교부신청 전, 중간평가 실시 후(또는 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전)
  - 교육 대상 : 지원 단체 사업수행 담당자 및 회계담당자
  - 교육 내용 : 지원 사업 회계처리기준 및 정산서 작성 등 관련 교육
- 회계검사

- 점검시기 : 중간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제출 후(6월, 10월)

- 점검내용

점검내용	세부점검항목
지원사업 회계처리에 대한 종합분석	- 각 단체·사업별 집행 실적 분석 - 주요 회계처리기준 위반 유형 분석 - 지원사업 점검 결과를 토대로 예산 관련 개선사항 제안 등
각 사업별 정산보고서에 대한 회계검사	- 지원단체별 사업 실행예산서를 근거로 예산집행 여부 확인 - 예산집행 관련 지원금 회계처리기준 및 교부조건 준수 여부 - 사업 집행실적 대비 지원금 집행내역 일치 여부 등

## □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신고·승인신청

○ 변경신고 및 승인신청 대상 내용

구 분		사업 내용 및 예산
변경 승인 신청	사업 내용	○ 단위사업의 중대한 변경
	예산	○ 단위사업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예산 조정 ○ 단가가 정해진 비목의 금액조정 ○ 비목간 금액조정 ○ 기타 신고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의 변경
변경 신고	사업 내용	○ 사업의 기본방향이나 지원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단위사업 내 사업일정의 2개월 내 연기 또는 조정 - 단위사업 내 추진계획의 일부변경 - 기타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사업내용의 일부 변경
	예산	○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 단위사업 내 단가가 정해지지 않은 비목 내의 금액조정 (단위사업 총액의 20% 이내) - 자부담 총 금액의 조정

※ 단위사업 : 지원 대상 사업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해당 단체가 수행하는 세부사업(최하위 개념)

○ 신청일 : 변경 15일 전(한국전파진흥회 도착 기준)

※ 단체에서 변경신고로 신청하였으나 한국전파진흥회의 검토결과 승인신청 사항일 경우, 단체에서는 변경발생 10일전까지 승인신청

○ 신청양식

사업명	당초계획	변경계획	사 유

※ 공문(제목 : 00사업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 신청)으로 제출하고, 사업 변경내역을 6월 및 10월 결과보고서에 반드시 기재

-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는 결과평가지 반영하고, 부적절한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 2010년 10월
- 정산내용 : 불용액 및 이자발생액 파악, 회계검사 결과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에 따른 지원금 환수 검토
- 정산결과 : 불용액 반납 및 지원금 환수 조치 등

**4 추진 일정**

□ 추진 일정

세부내용	추진일정(예정)
○ 지원 사업공고	○ 2. 8.
○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및 사업접수	○ 2. 8. ~ 2. 19.
○ 심사위원회 개최	○ 2. 24. ~ 2. 26.
○ 2010년도 사업자 선정결과 발표	○ 3월 초
○ 회계교육 및 지원금 1차 교부	○ 3월 중
○ 중간평가 및 지원금 2차 교부	○ 6월 ~ 7월
○ 최종 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 10월

## 5 신청서 양식

### □ 신청서 작성 지침

1. 아래의 서류를 2 set로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사업신청서 1부
  - ② 단체 자기소개서 1부
  - ③ 지원사업 계획서 1부
  - ④ 연대사업 단체의 예산 및 업무분담 계획
  - ⑤ 연대사업 구성 사업 협약서 1부
  - ⑥ 법인설립허가증, 단체등록증 등 1부
  - ⑦ 정관 또는 회칙 1부
- ※ ④,⑤은 연대사업 또는 컨소시엄 구성 사업일 경우 제출

- 1) 각 서류는 게시된 양식에 따라 작성할 것.
- 2) 각 set는 철사기(Stapler) 등을 이용하여 편철하지 말고, 집계를 이용할 것.
- 3) 서류 제출시, 파일수록 CD 1매 포함

2. 제출서류의 완성도 및 제출기한 준수여부는 심사에 반영되므로, 작성 및 제출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기한 : 2010년 2월 19일(금) 18:00, 제출처 도착분 유효

4.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

5. 제출처 : 한국전파진흥원 시청자권익증진부

(138-803,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78 IT벤처타워 서관 14층)

※ 연락처 : 02-2142-4444~6

# 2010년도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신청서

<b>단체명</b>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및 참여단체 모두 기재하고 관련 학회 및 대학교 관련학과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단체는 대표단체 및 참여기관을 모두 기재			
<b>사업명</b>				
<b>사업유형</b> (해당란에 ○표)	① 수신기 보급 ( ) ② 장애인 기획사업 ( )			
<b>총사업비</b>	총                  원	지원금	총                  원(    %)	
		자부담	총                  원(    %)	
<b>단체등록사항</b>	○ 등록부처(시/도) :                                  <등록번호 :                  > ○ 등록일 : ※ 연대사업으로 추진하는 단체는 참여단체 모두 기재			
<b>대표 단체 연락처</b>	<b>주소</b>	□□□-□□□		
	<b>전화 및 FAX</b>	(전화) : (지역번호)0000-0000	(FAX) : (지역번호)0000-0000	
	<b>담당자</b>	직위		성명
		휴대폰		E-mail

2010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한국전파진흥원장    귀하

(단체 자기소개서)

## ○○○○단체 (예시)

<b>주 소 및 연 락 처</b>	서울 구 동 (우편번호 - )	
	○ 전 화 : ○ 사업담당자 :	○ FAX : ○ E-Mail :
	○ 인터넷 홈페이지 :	
<b>설립목적</b>	○	
<b>단체연혁</b>	○ '81.11. 8 ○○○ 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주요연혁을 중심으로 5줄 내외 작성)	
<b>인력현황</b>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회원수 : (3개년 : '07년 '08년 '09년 )	○사무국 직원수 : 명 (상근: 비상근 : )
<b>기구현황</b>	<p>※작성예시</p> <pre>           graph TD             A[회 장] --&gt; B[상임이사]             B --&gt; C[사무국장]             C --- D[지역본부]             C --&gt; E[재 정]             C --&gt; F[정책기획]             C --&gt; G[모 니 터]             C --&gt; H[홍 보]           </pre>	
<b>2009년 예산현황</b>	○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b>2009년 주요사업</b>	※작성지침 - 2009년 방송발전기금 지원사업 우선 기입 후 기타 정부보조 사업 기입 - 단체 자체 사업은 정부보조 사업이 총 3개 이상일 경우 미기재 권장 ○	
<b>2010년 주요사업 계 획</b>	○ ○	

※ 단체 자기소개서의 경우 1Page 이하 작성 권장



## □ 2009년 지원사업 추진실적

- ※ 2009년도 방송발전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서술 또는 개조식으로 기술
- ※ 방송발전기금 지원사업 외 정부 등 타 기관의 지원사업을 추진한 경우 지원부처·기관명·지원사업 등 기재
- ※ 신규 지원단체일 경우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을 수행할 역량이 있음을 증빙할만한 자료(연도 구분 없음)

○ 사업명 :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 □ 2010년 주요사업 계획

- ※ 주요 사업목표 및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기재하되, 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정부부처·기관의 지원사업 추진계획이 있을 경우 함께 기술

○ 사업명 :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 2010년도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계획서

※ 페이지수는 제한하지 않음

## 1. 신청사업명 :

## 2. 사업목적

○

○

## 3. 사업추진기간

○ 2010년 월 일 ~ 월 일

※ 사업은 9월 30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

## 4. 사업추진방법

○ 사업목적의 설정 방법

※ 사업대상 계층 및 지역, 사업목적 설정하게 된 배경 등을 서술개조식으로 기술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 목적을 달성하고자 활용되는 기법(기초조사(survey), 교육, 회의, 워크숍 등을 기술

## 5. 세부추진계획 (일정별, 추진단위별)

□ 작성지침 : 사업추진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제출 시 사업내용 일부에 대해서는 생략 또는 간소화함

- 일정의 경우 월간단위, 인선의 경우 분야 혹은 소속단체만 기재함.
- 개최 장소는 개최지역만 기재

구분	오 작성 예	올바른 작성 예
일정	○○세미나 : 2009. 3. 5.	○○세미나 : 2009년 3월 중
장소	서울특별시 ○○구 □□ 세미나실	개최지역만 기재
인선	발제: ○○대학교 홍길동 교수	소속단체, 소속분야만 기재

※ 심사과정에서 지원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세부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세부내용을 기재토록 할 수 있음

세부사업	일정	세부추진내용
사업 1	~	(제목, 장소, 참여인원, 활동내용 등)
		○
		○
	~	○
		○
		○
	~	○
		○
		○
사업 2	~	(제목, 장소, 참여인원, 활동내용 등)
		○
		○
	~	○
		○
		○
	~	○
		○
		○

## 6.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 7.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                   백만원 ( 100%)

○ 보조금 :                    백만원 (     %)

○ 자부담 :                    백만원 (     %)

## 8. 지출항목별 산출내역

(단위 : 원)

단위사업명	비목(항목)	예산액		세부산출내역	비고
		지원금	자부담		
	계	%	%		
	총계				

-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지원사업 항목별 예산기준에 맞춰 작성
- 단가, 인원수 등을 상세히 기재
- 자부담의 경우, 특정 비목에 대해 지원금과 동시 편성하지 말고, 반드시 독립된 비목으로 편성

## 연대사업 단체의 예산 및 업무분담 계획

단체명(기관명)	대표자	분담업무 내용	재원분담(천원)		
			계	지원금	자부담

○ 대표단체를 먼저 기재, 전체 금액은 세부 실행예산서와 일치

# 2010년도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협약서

(연대사업 구성 사업만 해당)

- 신청사업명 : \_\_\_\_\_
- 사업유형 : 연대사업 ( )
- 연대단체(기관) : ○○○○○○ 외 \_\_\_\_\_ 개 단체(기관)
- 대표단체명 : \_\_\_\_\_
- 대표자명 : \_\_\_\_\_  
(이하 선임된 대표단체의 대표로 기준)
  - 소재지 : \_\_\_\_\_
  - 주민등록번호 : \_\_\_\_\_
  - 현 주소 : \_\_\_\_\_
  - 연락처 : \_\_\_\_\_

위 본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2010년도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에 아래의 단체(기관)들이 연대하여 공모하는 것에 동의하며, 사업 수행 및 지원금 운용 등 사업과 관련한 제반 책임은 선임된 대표에게 있음을 협약합니다.

2010. . .

선임대표 : \_\_\_\_\_ (인)

각 단체명(권소사업 구성의 경우 기관명), 대표자명 및 대표 날인

- |              |        |     |
|--------------|--------|-----|
| ① 단체명(기관명) : | 대표자명 : | (인) |
| ② 단체명(기관명) : | 대표자명 : | (인) |
| ③ 단체명(기관명) : | 대표자명 : | (인) |
| ④ 단체명(기관명) : | 대표자명 : | (인) |

## 한국전파진흥원장 귀하

## 지원사업 확인서

---

---

단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현 주 소 :

연 락 처 :

위 본인은 한국전파진흥원의 '2010년도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사업'에 공모함을 확인합니다.

2010. . . .

대 표 : (인)

한국전파진흥원장 귀하



---

## **Ⅲ. 2010년도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사업**

---

# 2010년도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계획

## 1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편성 및 지원확대를 통해 시청자가 방송을 자유롭게 향유하고, 방송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디지털 시청자복지 환경 조성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정의》

- 방송제작을 본업으로 하지 않은 자연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직접 제작하여 방송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방송사업자를 통해 방송된 프로그램을 말함

### □ 지원분야 및 예산

(단위 : 백만원)

지원분야	예산	선정방법	비고
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1,480	공모 심사	○ 배정된 예산은 신청 및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공모 심사	

### □ 지원 자격

- 방송법 제9조에 의거, 허가받은 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 선정방식 : 공모제에 의한 지원사업 선정

### □ 사업기간 : 2010년 3월 ~ 2010년 11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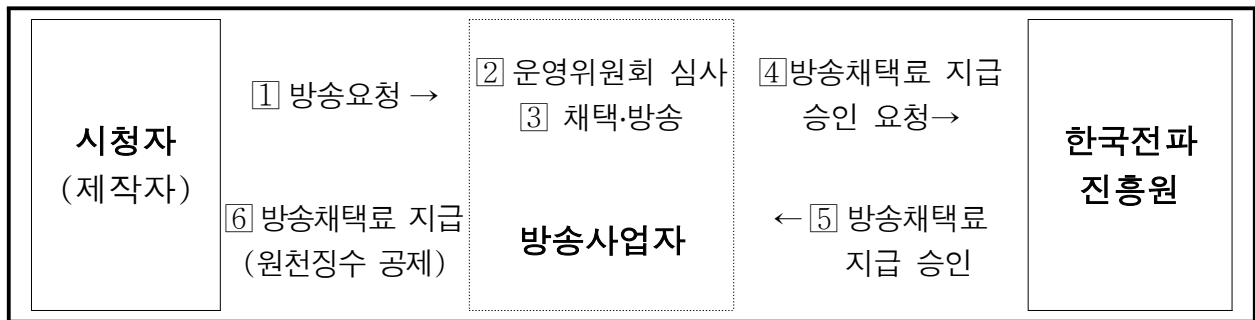
### □ 지원근거

- 방송법 제38조(기금의 용도)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에 사용된다.  
4.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 방송법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⑦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을 통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 ② 방송채택료 지급절차 및 지급기준

### □ 지급 절차

- 시청자의 요청에 의해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방송한 방송사업자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채택료를 한국전파진흥원에서 지원받아 시청자(제작자)에게 지급함



- 한국전파진흥원은 방송사업자의 방송채택료 지급 승인 요청 공문을 수령, 각종 증빙자료(방송물 등)들을 검토한 후 사업자에게 승인 공문 발송
- 방송사업자는 매월 7일 이내 방송채택료 지급 승인을 요청, 한국전파진흥원의 지급 승인 공문 수령 후 지원금 전용 통장에서 시청자(제작자)에게 방송채택료 지급

※ 승인 공문 수령 날짜가 통장 출금일 이전이어야 함, 공문 수령이전 지급 시 환수 조치

### □ 지급 기준

- 주 1회 이상 정규 편성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방영된 방송물에 지급
- 등급별 차등 지원, 분당 3~6만원 지급, 개인(단체 포함) 600만원 이내 연간 지급한도 설정
  - ※ 방송물 등급의 선정은 각 방송사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등급별 판정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방송사는 계약한 방송편수 및 월별 균등 지급 등을 고려하여 방송채택료 지급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선정의 공공성 및 심사의 체계성 확보 방안 및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전담인력을 갖춘 방송사에 지급
  - ※ 방송사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외부 3인 이상, 총 5명 이상으로 구성

### 3 지원금 교부 및 지원제한

#### □ 지원금 교부

- 교부방법 : 1차 70% 선지급, 상반기 회계 평가 후 30% 지급
  - ※ 사업내용상 1차 전액지원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1차에 100% 지급 가능
- 방송사업자는 반드시 별도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지원사업 전용 통장으로 지원금 및 자부담 금액 관리

#### □ 방송채택료 지급 승인 신청

- 신청기간 : 매월 7일 이내
- 신청내용 : 전월분 지원금 집행실적(방송채택료 지급증빙자료 포함) 및 당월 방송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급 승인 신청

#### 《예시 : 6월 신청내용》

- ① 4월분(전월분) 지원금 집행실적
  - 5월에 수령한 지원금(4월분 방송물)의 지급내역
  - 지원금 지급 증빙자료(계좌이체 영수증 등) 포함
- ② 5월 방송분 신청
  - 5월에 방송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금 신청

- 한국전파진흥원의 지급 승인 공문 수령 후 지원금 전용 통장에서 시청자(제작자)에게 방송채택료 지급

#### □ 지원제한

- 정부 타 지원사업으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으로 방송채택료 지원 금지
- 타 방송사에서 기 방송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중복지원 금지
  - ※ 발견시 환수조치

## 4 지원사업 심사

### □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접 관련되는 인사는 배제하고 방송비평, 미디어, 방송법,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2인을 포함하여 총 10인 이내로 구성

### □ 심사 방법

- 적격심사 : 제출서류를 완비하고 지원조건에 반드시 부합하여야 함  
※ 지원조건 : 주 1회 이상 정규 편성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 전담직원 여부 등
- 심사표에 의한 5개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8개 평가내용별로 100점 만점으로 배점, 심사표 참조(붙임 1)
- 평가점수 60점 미만 지원사업자는 사업선정시 탈락
- 심사표에 의한 평가결과, 사업자별·지역별 균형여부 및 2010년 사업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액 결정

## 5 지원사업 결과보고

### □ 사업진행 실태 점검

- 실적보고 및 지원금 요청시(매월 1회) : 방송편성 기준 준수여부, 지원금 지급기준 준수 여부, 중복 지원금 신청 여부 등
- 현장점검 실시(연 1회 이상) : 지역별·MSO별 구분하여 방송편성 기준 준수여부 및 운영위원회 운영 등 점검

### □ 종합결과 보고(12월 말)

- 방송채택료 원천징수 결산 후 한국전파진흥원에 제출
- 자체 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 지원금 집행실적, 수급계획 대비 편성비율,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실적,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 등

## 6 추진 일정

### □ 추진 일정

세부내용	추진일정(예정)
○ 지원 사업공고	○ 2. 8.
○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및 사업접수	○ 2. 8. ~ 2. 19.
○ 심사위원회 개최	○ 2. 24. ~ 2. 26.
○ 2010년도 사업자 선정결과 발표	○ 3월 초
○ 회계교육 및 지원금 1차 교부	○ 3월 중
○ 중간평가 및 지원금 2차 교부	○ 7월 ~ 8월
○ 방송실적 보고 및 방송채택료 지급 승인 신청	○ 매월
○ 최종 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 10월

[붙임 1]

## **2010년도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지원사업 심사표**

사업자명	
프로그램명	

평가지표	세부평가항목	배점	심사점수
i) 사업계획의 적정성(30점)	① 소수자 보호, 지역성 구현, 방송의 다양성 실현	10	
	② 연중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편성계획 수립 및 이행방안 적정성(편성기간 : '10년 3월~'11년 2월)	20	
ii) 공정성 및 체계성(20점)	③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 여부	10	
	④ 운영위원회 구성의 지역성, 대표성, 전문성 ※ 운영위원회는 외부인 3인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반드시 구성	10	
iii) 지원계획 수립 적절성 등(20점)	⑤ 지원계획 수립 적절성(프로그램 제작 교육, 장비 및 시설지원 등)	10	
	⑥ 참여프로그램 홍보(자막방송, 스포츠, 홈페이지 등)	10	
iv) 전담인력 배치 여부(10점)	⑦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편성 관련, 전담인력 배정여부(유무)	10	
v) 자체 자원부담 비율(20점)	⑧ 자체 자원비용 부담비율(15% 이상, 15% 미만~10% 이상, 10% 미만~5% 이상, 5% 미만) ※ 자체 자원비용은 방송채택료, 운영 위원회 관련 경비 등 현금성 지출비용을 의미(기간 : '10년 3월 ~ '11년 2월)	20	
<b>합 계</b>		<b>100점</b>	

2010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붙임 2]

---

## 신청서 양식

---



## 〈신청서류 작성지침〉

1. 모든 서류의 사업자명, 방송사명은 방송법 제9조에 의해 허가받은 법인명(상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아래의 서류를 2 set로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신청공문 1부
- ②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③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편성계획서 1부

- 1) 각 서류는 게시된 양식에 따라 작성할 것.
- 2) 각 set는 철사기(Stapler) 등을 이용하여 편철하지 말고, 집게를 이용할 것.
- 3) 서류 제출시, 파일수록 CD 1매 포함

2. 제출서류의 완성도 및 제출기한 준수여부는 심사에 반영되므로, 작성 및 제출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기한 : 2010년 2월 19일(금) 18:00, 제출처 도착분 유효

4.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택배 또는 퀵서비스 제출 불가)

5. 제출처 : 한국전파진흥원 시청자권익증진부

(138-803,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78 IT벤처타워 서관 14층)

※ 연락처 : 02-2142-4444~6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자명					
프로그램 개요		1. 프로그램명 : 2. 방송일시(본방기준) : ex) 매주 월요일 17시20분 ~ 17시50분 3. 분량(본방기준) : 00분 4. 편성기간 : 2010년 00월00일 ~ 00월00일(총 00회)			
총 사업비		총 원	지원금	총 원( %)	
			자부담	총 원( %)	
주 소		□□□-□□□			
연락처	총괄 책임자	직 위		성 명	
		휴대폰		일반전화	
	실무 담당자	직 위		성 명	
		휴대폰		일반전화	
		E-mail		FAX	

2010년    월    일

사업자명 :

직 인

한구전파진흥원장    귀 하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편성계획서

### 1. 프로그램 소개

o 구체적으로 기재

### 2. 자체 전담인력

연 번	소 속	성 명	이 력
1			
2			
3			

### 3. 연중 정규프로그램 편성계획

※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편성계획(자부담 내역 포함)

### 4. 프로그램 수급계획

수급대상	분량(분)	내 용	비 고
계	000분	총 000편	

※ 2010년 3월 ~ 11월 30일까지 예상 수급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5. 운영위원회 구성

연 번	성 명	현직	추천단체	비 고
1				
2				
3				
4				
5				
6				

※ 운영위원회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할 것(외부인은 반드시 3명 이상 포함)

※ 추천단체는 해당 소속단체에서 추천하여야 함

### 6.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구체적으로 기재)

- ① 지원계획 수립 적절성(프로그램 제작교육, 장비 및 시설지원 등)
- ② 참여프로그램 홍보(자막방송, 스포트, 홈페이지 등)
- ③ 기타

### 7. 예산산출내역

구분	지원요청 금액	자부담 금액	비고
세부산출내역	ex) 3만원×000분=0,000만원 4만원×000분=0,000만원 5만원×000분=0,000만원 6만원×000분=0,000만원	ex) o 방송채택료 : - 0만원×00분=000만원 - 0만원×00분=000만원 o 운영위원회 사례비 : - 월 0만원×4명×10개월=000만원	
계	000분, 0,000만원(00.0%)	000만원(00.0%)	

※ 세부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자부담 금액 : 방송채택료, 운영위원회 관련 경비 등 현금성 지출비용을 의미  
(기간 : '10년 3월 ~ '11년 2월)

---

## **IV.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

# 1. 지원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 지원금 예산은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함 (실질 소요예산 수립)
-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함.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 ※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지원금 예산편성기준표에 의거 정확하게 편성하고, 예산절감에 노력
  - 지원금의 편성은 지원사업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 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편성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
    - ※ 부득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예산편성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예산을 별도 편성 (사전 한국전파진흥원 통보 또는 승인 필요)
- 지원금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은 **단체운영 기본경비로 편성할 수 없음**

## < 지원금 편성 불가 비목 >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대료·사무용 집기 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 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용역성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교부금 신청을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료

※ 사업수행관련 지원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함

○ 지원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회의비 편성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 지원금 예산은 비목 설정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음

**< 예 시 >**

○ 자료집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지원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에 대해 총 사업비의 2~5%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편성할 수 있으나** 다음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활동비 :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 등 소액 경비로서 사업진행비 비목에 편성

**◀ 사업비 총액대비 활동비 인정 한도액 ▶**

◇ 총사업비(1천만원~1억5천만원)	◇ 활동비(50만원 ~ 350만원)
- 1억원 초과	사업비의 2.5%(300만원 ~ 350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사업비의 3.0%(200만원 ~ 300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사업비의 4.0%(150만원 ~ 200만원)
- 3천만원 이하	사업비의 5.0%( 50만원 ~ 150만원)

○ 각종 사례금 및 인건비성 경비(강사, 토론, 발제 사례비, 연구원인건비 등)는 자체인사(정기적 보수를 받는 임직원 및 상근직)에게 지급할 수 없음

○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면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추어 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를 제출하여야 함

## 2. 지원금 회계처리기준

- 지원금은 사업추진기간 내에 집행을 완료하여야 함
  -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이자는 반납(별도 통보)
- 지원금은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적용하되, 자부담은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부터 집행 가능함
  - ※ 사업신청을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료의 경우 사업계획서 접수 1주일 이전부터 집행가능 (단, 자부담 편성)
  - ※ 위반시 지원금은 회수, 자부담은 불인정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수정 제출한 실행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절차(변경 신고 또는 승인신청)를 거치되, 단위사업 내 비목 내 예산변경은 20% 내에서 승인 없이 조정 가능하며, 조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전파진흥원에 통보해야 하며, 중간보고서 또는 결과보고서에 적시하여야 함
    - ※ 승인대상인 변경예산을 미승인 집행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 자부담 예산을 지원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변경신고 및 승인신청 대상 내용>

구 분		사업 내용 및 예산
변경 승인 신청	사업 내용	○ 단위사업의 중대한 변경
	예산	○ 단위사업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예산 조정 ○ 단가가 정해진 비목의 금액조정 ○ 비목간 금액조정 ○ 기타 신고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의 변경
변경 신고	사업 내용	○ 사업의 기본방향이나 지원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단위사업 내 사업일정의 2개월 내 연기 또는 조정 - 단위사업 내 추진계획의 일부변경 - 기타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사업내용의 일부 변경
	예산	○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 단위사업 내 단가가 정해지지 않은 비목 내의 금액조정 (단위사업 총액의 20% 이내) - 자부담 총 금액의 조정

※ 단위사업 : 지원 대상 사업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해당 단체가 수행하는 세부사업(최하위 개념)



< 예 시 >

- 교재비 100,000원, 강사료 100,000원의 경우, 예산 변경신고 한도는
  - 교재비 120,000원, 강사료 80,000원 또는
  - 교재비 80,000원, 강사료 120,000원까지 가능

- 사업완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사업완료 1개월 내 변경승인 불가)
- 지원금은 방송통신위원회 지원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 통장을 개설·관리**하여야 하고,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원금결제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함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가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 정리
  - 복수사업을 시행할 경우, 1개 사업별 별도 통장으로 관리
  - 자부담사업비에 대해서도 지원금통장을 이용하여 입출금 관리
  - 사업종료 후 통장을 해지하여야 함

<지원금 결제전용카드(Check카드)제 사용 요령>

- Check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지원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시중은행에서 발급
- 사업추진시 대금지급은 Check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Check카드에 의해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
- ※ 국고지원금 범위 내에서만 집행 가능

- 통장인출 및 사업비 지출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 인출 금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 금지
- 지원금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카드사용 점표)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10만원 이상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각 지부 단위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부송금은 반드시 계좌 입금 조치

○ 증빙 영수증

- 모든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Check카드)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칙으로 함
  - ※ 지출건당 3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만을 사업비 사용증빙 영수증으로 인정하며, 3만원 미만 소액결제의 경우 영수증 교부업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 신용카드(Check카드) 영수증은 지원금 입금통장에서 발급된 카드 영수증만을 인정

○ 지원금 예산편성기준표에 의거 정확하게 집행하고, 예산절감에 노력

- 지원금의 집행은 지원사업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 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 ※ 단, 집행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수 견적가능(결과보고서 제출시 증빙 자료로 견적서 제출)
- 부득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집행 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예산을 별도 편성(사전 한국전파진흥원 통보 또는 승인 필요) 집행

○ 인쇄비는 정부(조달청)인쇄기준요금을 적용하거나 준용하여 집행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읍셋인쇄 억제(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 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 집행금액이 100만원이상 인쇄비는 반드시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 첨부

-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 1)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 2)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 3) 표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기 사용
- 4) 지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 5) 인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각종수당 등 인건비 지급 시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지급증빙** 철저히 준수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신고 납부함

※ 원천징수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그 소득과 관련한 세액을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말함(위반시 가산세 납부)

- 지원 사업 관련 원천징수 대상

· 강사료, 원고료, 사회비, 회의참가비, 원고료 등 인건비성 경비(기타소득)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도(소득세법 제84조)

-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원 초과 시 반드시 원천징수

< 예 시 >

(기 준)

특정인에게 동일한 사업(2010년도 방송소외계층 지원사업 기준)으로 해당 사업기간 동안 지급된 기타소득에 대하여 25만원이 초과되는 시점부터 원천징수 실시

(사례1) 강사료(기타소득)가 300,000원인 경우 원천징수 방법

①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80/100)를 제한다.

$$300,000\text{원(강사료)} - \{300,000\text{원} \times 80/100(\text{필요경비})\} = 60,000\text{원}$$

②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의 20%는 소득세, 소득세의 10%는 주민세

$$\text{원천징수세액} = \{60,000\text{원} \times 0.2(\text{소득세율})\} + \{12,000 \times 0.1(\text{주민세율})\} = 13,200\text{원}$$

※ 이 경우 세금은 총 금액의 4.4%(4%는 소득세, 0.4%는 주민세)임 ⇒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에 문의

(사례2) 특정인의 인건비가 누적된 경우

성명	지급사유	지급일	지급액	원천징수 관련 지급누계	원천징수	원천징수액
홍길동	강사료	'08.10.24.	110,000	110,000	미실시	
	회의참석비	'08.10.31.	70,000	180,000	미실시	
	강사료	'08.11. 7.	110,000	290,000	실시	290,000×4.4%
	회의참석비	'08.11.14.	70,000	360,000	실시	70,000×4.4%
	강사료	'08.11.21.	110,000	470,000	실시	110,000×4.4%
	원고료	'08.11.24.	390,000	860,000	실시	390,000×4.4%

※ 인건비의 누계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시점에 합산하여 징수

- 인건비 지급에 대한 증빙서류는 결과보고서 제출

·계좌이체증빙(계좌이체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10만원 미만 시는 수령증 제출 가능), 원천징수신고서(원천징수영수증), 신분증사본

o 표준정산서에 의한 회계처리

- 중간보고 및 종합결과보고서 작성 시 회계처리는 반드시 표준정산서 양식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함

o 단체해산·소멸

- 지원단체가 해산, 소멸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함

- 단체가 통합되거나 단체활동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방송통신 위원회의 지원금 교부 재결정 조치를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함

## 예산 비목별 집행방법(기준)

예산비목	집행방법(기준)	비고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li> <li>- 「지원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예정 가격을 산정하여, 2개 업체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하고</li> <li>-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li> <li>-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Check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li> </ul> </li> <li>※ 감사료, 수당 등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하고 지급</li> </ul>	
회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은 직접 경비로 집행하고 식대 등 소모성 지출 억제</li> <li>※ 소속단체 임직원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불가</li> </ul>	
원고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출강에 따른 교재 원고료는 강의시간을 고려하여 차등지급</li> </ul>	
교통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할 수 없음</li> </ul>	
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직접 사업수행자)의 소액 경비에 대해서 단체 자율적 집행 허용</li> <li>※ 활동비 :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 등</li> <li>○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월별로 균등 집행하여야 하며, 일시 또는 2~3회에 일괄 지출할 수 없음</li> <li>○ 활동비에 대해서는 최종사용처의 영수증 구비를 생략하고, 지출결의서 및 수령자의 영수증(또는 수령날인)으로 회계증빙서류를 간소화 함</li> </ul>	
영수증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수증은 체크카드사용점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3만원 미만 소액결제의 경우에는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li> <li>※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에 의거</li> </ul>	

# 지원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공통기준)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 사 료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1시간 22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30,000원 (최대 350,000원)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방송통신위원회 사전협의)	- 1시간 18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00,000원 (최대 280,000원)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4·5급 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 1시간 1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50,000원	
	3급 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방송통신위원회 사전협의)	- 1시간 70,000원 - 초과 매시간당 4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1시간 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30,000원	
	다수인 출 강	- 2시간 미만  - 2시간 이상	- 5인이하 27.5만원 - 6 ~ 10인 40만원 - 11이상 55만원  - 5인이하 35만원 - 6 ~ 10인 50만원 - 11이상 70만원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의 참여
회의참석비	- 3시간 이내, - 3시간 초과시(1일 1회에 한함)	- 70,000원 - 100,000원		
단순인건비	- 1인 / 1일	- 30,000원		
원고료	- A4용지 1매기준 ·80columns × 20lines ·글씨 크기 13포인트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13,000원		
교통비	- 시내여비(4시간 미만 소요시 50%) - 시외여비 ·교통비 ·식 비(1인 1식) ·숙박비(1인 1실)	- 20,000원  - 실비 - 6,000원 - 25,000원		

※ 사업별 세부단가가 기준이 있는 경우 사업별 단가를 우선함

## 지원사업 항목별 예산편성 기준

항 목	기 준	비 고
강 사 료	- 공통기준 적용	
단순인건비	- 공통기준 적용	
연구원 인건비	- 학술용역산정기준에 따름	-<2009 학술용역인건비기준단가> 참조
원고료	- 공통기준적용	- 책자발간사업(백서·정기간행물 등)의 원고에 한정
번역료	- 외국어→한국어 : 20,000~30,000원 - 한국어→외국어 : 30,000~60,000원	- A4용지 10포인트 25행 1매 기준, 감수로 포함 금액
모니터비	- 최대 15인, 1인당 월 100,000원 이내 ·모니터 참가자 대상 (단체 상근자, 임직원 편성 불가)	- 지원금 신청 시 모니터 참가자 명단 제출 - 모니터 참가자 전원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회의참석비	- 공통기준 적용	- 외부인사
사회자사례비	- 1인 200,000원 이내	
발제자사례비	- 1인 400,000원 이내	- 원고료는 미지급
토론자사례비	- 1인 200,000원 이내	
통역사례비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단가에 따름	
심층인터뷰사례비	- 1인 100,000원 이내	
설문조사기념품	- 1인 10,000원 이내	
사업진행비(활동비)	- 총사업비의 2~5% 범위내	- 사업비 총액대비 활동비 인정 한도액 적용
진행비	- 1일 80,000원 이내 ※ 세미나, 토론회, 워크숍 등 : 1일 100,000원 이내	- 회의 진행을 위한 실비 집행
간담회비	- 1인 20,000원 이내	
장소사용료	- 1회 500,000원 이내	
현수막제작비	- 1개 100,000원 이내	
인쇄비	- 조달청 인쇄단가 기준 적용(준용)	- 100만원 이상은 반드시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
발송비	- 실비	
식비	- 1인 10,000원 이내 ※ 행사기간이 2일 이상인 세미나, 워크숍 등 : 1인 25,000원 이내	
교통비	- 실비	
숙박비	- 1인 50,000원 이내	
송금수수료	- 지원금의 1% 이내	- 지원금 계좌이체시 송금수수료로 지출

※ 식비, 진행비, 간담회비 등은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하는 경비로 개인별 지급 불가

# 장애인 기획사업 관련 예산편성 기준

항 목		기 준				비 고	
연구원 인건비	책임연구원	- 월 2,650,513원	공무원 4급 이상	정부출연 연구기관	정부투자 산하기관 등 2급 이상	대학 및 학술단체 등 대학 부교수 이상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 경력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소유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8년 이상 경력소유자 -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소유자
	연구원	- 월 2,032,376원	5급	해당 연구 기관의 연구 직급	3급	대학 조교수 이상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소유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소유자 -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소유자
	연구보조원	- 월 1,358,577원	6~9급		4~6급	대학 조교 이상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소유자 -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소유자
	보조원	- 월 1,018,968원	-				-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인건비		- 2010년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 적용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자문사례비		A급	- 300,000원 이내		- 법률 자문 등 전문적인 사항		
		B급	- 100,000원 이내		- A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야의 자문, 미디어교육 등 학술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은 이에 해당		
원고료		단위	'가'등급	'나'등급			
	자료발체 정리	200자 원고지 1매	-	4,000			
	번역료	200자 원고지 1매	7,000	5,000			
	사진촬영	컷	200,000	100,000	- 사진상태나 촬영건수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삽화 일러스트	대	컷	400,000	300,000	- 삽화상태나 건수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중		200,000	150,000		
소		100,000		70,000			
사진임차료	흑백	컷	30,000	-			
	슬라이드		50,000	-			



자료발간비	인쇄비	- 조달청 단가 기준적용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 - 2개 이상 업체의 비교견적서 첨부
	발송비		- 우편료는 실비 편성
검수위원회 위원 사례비	'가'등급	- 500,000원	
	'나'등급	- 400,000원	
<b>※ 자문사례비, 원고료, 검수위원회 위원 사례비 등급 적용기준</b>			
구분	대상자		지급액
'가'등급	1. 대학원 및 대학(교) 부교수이상, 국회의원 2. 이사관급 이상의 공무원 3. 언론기관, 전문기관,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의 임원 및 집행간부급 이상 4. 기타 1~5에 준하는 인사		- 기준액
'나'등급	- 해당분야의 학식과 지식이 있는 자로서'가'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인사		- 기준액의 80%

---

## V. Q & A

---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지원사업 Q & A

### 1. 시청자 참여프로그램란 무엇입니까?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은 방송을 본업(業)으로 하지 않는 자연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직접 제작하여 방송사에 편성(송출)을 요청하여 방송된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 2.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으로 방송한 모든 프로그램은 방송채택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으로 방송한 프로그램 중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지향점(Guideline)'에 부합하는 프로그램만 방송채택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지향점(Guideline)

- 소수자보호, 지역성 구현, 방송의 다양성 실현

### 3.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중 방송채택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어디서 결정하게 됩니까?

- 각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가칭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 4. 사업시행일 전에 본(초)방을 하였고, 사업시행일 이후에 재방을 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은 방송채택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 '10년도 지원대상은 사업시행일 이후, 본(초)방 프로그램 기준이므로 방송채택료 지급이 불가합니다.

## 5. 방송채택료는 어떤 절차를 거쳐 지급 받을 수 있습니까?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지원사업자로 선정된 방송사업자가 편성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의 프로그램이 방송되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송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방송사에서 방송채택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 해당 방송사는 매월 초 전월 방송된 1개월간의 실적을 한국전파진흥원에 제출하게 되고, 한국전파진흥원은 지급기준과 제한조건에의 이상여부를 확인 한 후 해당 방송사에 방송채택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 6.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위원회’ 는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합니까?

- 운영위원회는 방송사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외부인 3인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일반적 특성을 감안할 때, 방송사 내부인력과 외부전문가 참여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며, 위원회 참여인사 간 합의제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7.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반드시 방송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 현행 방송법(제86조)상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각 방송사는 반드시 심의기구를 두고 방송되기 전에 심의를 하여야 하며, 방송된 후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심의를 받게 됩니다.

## 8. 편성계획서를 제출하여 대상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방송실적이 없거나 주간 편성이 결방되는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까?

- 당해연도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지만, 차기년도 사업자 선정 시 전년도 사업평가를 반영할 예정이므로, 제출한 편성계획서를 준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은 반드시 단일·고정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의 개별코너로 편성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 바람직한 방향은 단일·고정 프로그램이라고 보지만, 방송사별 자율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개별코너도 가능합니다.

10. 방송실시 결과를 제출할 때,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  
하여 방송한 분량, 즉 방송채택료 지원부분만 해당합니까?

- 고정·단일 프로그램으로 편성된 경우에는 프롤로그를 포함한 프로그램 방송분량을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방송실시 결과로 제출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방송프로그램 편성이 코너일 경우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채택료 지원부분만 실시결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SO의 경우,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교환물로 방송하였을 경우, 방송  
채택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와 방송실시 결과에 이를 포함 할 수 있습니까?

- 교환물로 방송하였을 경우, 최초 본방에 대해서만 방송채택료를 지급합니다.
- 방송실시 결과는 방송사별 실적이므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12. 자체 자원비용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자체 자원비용은 한국전파진흥원의 지원금을 제외한 '방송채택료',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등 현금성 지출비용을 의미합니다.(기간 : '10년 3월 ~ '11년 2월)

13. 편성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편성기간은 반드시 연간단위이어야 합니까?

- 편성기간은 방송사의 자체판단에 따라 3월, 6월, 9월, 연간 등 자율적으로 정하면 되나, 한국전파진흥원의 지원은 2010년 3월부터 11월 30일까지 방송분에 한해 지원됩니다.

#### 14. 한국전파진흥원의 방송채택료 지원 시 제한조건이 있습니까?

- 보다 많은 시청자의 참여를 위해 연간 개인(단체 포함)은 6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정부의 여타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의 결과물 또는 활용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으며, 허위·기타 부정확한 방법으로 방송채택료를 지원받은 경우 전액 환수조치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5. 방송채택료 지원 시 원천징수 대상 및 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 방송채택료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에 따라,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이 25만원 초과 지급 건에 대해서는 4.4%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득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

- ① 방송채택료 300,000원 지급
- ② 기타소득 : 300,000원
- ③ 필요경비 : 80% 인정
- ④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 - 필요경비 = 300,000원 - (300,000원 \* 80%) = 60,000원
- ⑤ 원천징수세액 = [60,000원 \* 20%(소득세)] + [(60,000원 \* 20%) \* 10%(주민세)]  
= 12,000원 + 1,200원 = 13,200원 (4.4%)